
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10항”을 “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”를 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 면제·감액 규모를 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조제4항을 “삭제”하고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법 제11제9항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조제7항(중전의 제5항)중 “제4항까지”를 “제6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1조제7항”을 “법 제11조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계산하되”를 “산정하되”로, “계산한다”를 “산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·감액되는 경우에는 면제·감액분을 평균등록금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.

제3조제1항의3호 중 “인하여”를 “인한 학생의 사유로”로, “인정할 때에는”을 “인정될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액수가”를 “액수와 재난으로 감면한 액수의 합이”로 한다.

제4조제7항의 “기준에”를 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의 “사립”을 “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유학목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사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(連署)로”를 “학교의 장은”으로, “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”을 “일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학생의 납부연기 신청 절차·방식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등록금 반환)”을 “(등록금 반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,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 후 복학한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제7항”을 “법 제11조제10항”으로 하고, “법 제11조제8항”을 “법 제11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